

## 감 사 의 견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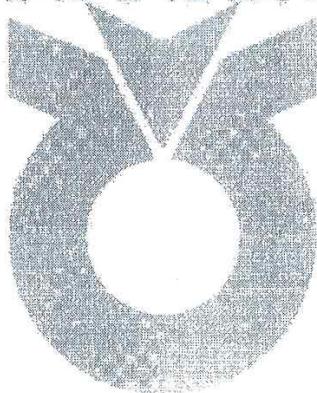
농협법 제71조 및 우리조합 정관 제137조 제2항에 의하여

2016년 1월 18일~19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

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(안)의

각 조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을

인정함.



1333643955

15회 2016년 1월 19일

증명\*  
풍기인삼협동조합

감 사 권 용 회 (인)

감 사 조 경 떡 (인)